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269호

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5일  
중소기업청장

## 「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중소기업 경영개선 건강진단 근거규정 마련 및 대상 업종 추가 등을 통해 건강관리 운영체제 효율화 추진

### 2. 주요내용

가. 추가 처방에 따른 맞춤형치유사업 참여 범위 명확화(안 제16조)

현 행	개 정
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, 진단기업에 대한 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,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	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, 진단기업에 대한 <u>추가 컨설팅</u>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,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

나. 경영개선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(안 제16조의2)

현 행	개 정
청장은 구조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신청 및 접수, 진단 실시, 처방전 발급,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	청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「구조개선 건강관리」와 「경영개선 건강관리」의 특례조항을 두어 진단신청 및 접수, 진단 실시, 처방전 발급,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다. 건강진단 신청에 대한 횡수 제한 삭제(별표 제1호)

- 건강진단 사례 증가에 따라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횡수가 4회 이상인 기업에 대한 제한 삭제

라. 건강진단 대상 업종에 건설업 추가(별표 제2호)

-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추가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업종에도 추가 반영
- \* 건설업종 중 산업플랜트, 조경,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, 방음 및 내화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

마. 진단기관 직원 확인사항(서류) 조정(별지 제1호)

- 공장등록증명서를 기본 확인사항에서 필요시 확인사항으로 변경

### 3. 의견제출

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재도전성장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\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 
 재도전성장과  
 (전화 : 042-481-8965, Fax : 042-481-6849)

## 「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」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	
<p><b>제16조(사후관리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, 진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,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<b>제16조의2(구조적 경영으로 기업에 대한 특례)</b>  <u>청장은 구조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신청 및 접수, 진단 실시, 처방전 발급,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b>[별표 제1호] 진단 신청 제한 대상</b>            1.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. 단, 처방전 추가 발급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한다.            2. ~ 8. (생략)</p> <p><b>[별표 제2호] 상시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</td> </tr> </table> <p><b>[별지 제1호]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</b>            &lt; 5페이지 참조 &gt;</p>	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	<p><b>제16조(사후관리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, 진단 기업에 대한 <u>추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</u>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,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6조의2(구조적 경영으로 기업에 대한 특례)</b>  <u>중소기업청장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「구조개선 건강관리」와 「경영개선 건강관리」의 특례조항을 두어</u> 진단신청 및 접수, 진단 실시, 처방전 발급,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<b>[별표 제1호] 진단 신청 제한 대상</b>            1.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. 단, 처방전 추가 발급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한다.            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[별표 제2호] 상시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 <u>건설업(F) 中</u>  <u>산업플랜트 건설업(41225) · 조경 건설업(41226) ·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(41224) · 방음 및 내화 공사업(42203) ·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</u></td> </tr> </table> <p><b>[별지 제1호]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</b>            &lt; 5페이지 참조 &gt;</p>	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 <u>건설업(F) 中</u> <u>산업플랜트 건설업(41225) · 조경 건설업(41226) ·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(41224) · 방음 및 내화 공사업(42203) ·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</u>
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			
진단신청 대상 업종(표준산업분류번호) 제조업(C)·광업(B)·운수업(H) 도매 및 소매업(G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(J)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N) 전문,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M)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(E) <u>건설업(F) 中</u> <u>산업플랜트 건설업(41225) · 조경 건설업(41226) ·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(41224) · 방음 및 내화 공사업(42203) ·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</u>			

